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88 발의연월일: 2022. 10. 12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위성곤 · 황보승희

최인호 · 정성호 · 어기구

이원택 • 이성만 • 김희곤

정점식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내수출입 운송물량 중 국적선사가 담당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.

그런데 법 제104조의30 제1항제1호의 감면요건에 사용되는 단위는 비용이나 물동량 단위로 산출한 수치를 해당 감면요건의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감면율 또한 높지 않아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본 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음.

더욱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상수 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운송량을 보다 더 확 대해야하는 실정임.

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을 현실 화하며 감면규모를 확대 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30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30 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 로, "100분의 1"을 "100분의 3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25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4조의30(우수 선화주기업 인	제104조의30(우수 선화주기업 인
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	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
세액공제) ① 「해운법」 제47	세액공제) ①
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	
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(「물류	
정책기본법」 제43조제1항에	
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	
한 기업으로 한정한다) 중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	
이 조에서 "화주기업"이라 한	
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	
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<u>2022년</u>	<u>2025년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 「해운법」 제	12월 31일
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	
물운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	
"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"라	
한다)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	
출한 운송비용의 <u>100분의 1</u> 에	<u>100분의 3</u>
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	
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	
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	
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	
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	
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명	만 해
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	공제
한다. 다만, 공제받는 금	남액이
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	또는
법인세의 100분의 10을	초과
하는 경우에는 100분의	10을
한도로 한다.	

- 1.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- 2. (생 략)
- ②・③ (생략)

<u>.</u>
1
<u>100분의 25</u>
2.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간음)